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58
----------	-------

발의연월일 : 2024. 1. 3.

발 의 자 : 이은주 · 장혜영 · 심상정
강은미 · 배진교 · 류호정
김종민 · 강민정 · 이수진(비)
박용진 · 양정숙 · 기동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석탄류·코크스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이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고체연료 사용규제는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적용되므로 서울·경기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교외에 위치를 두는 경향이 커 현재 규제 대상지역이 포괄하는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실제 공장입지를 살펴보면,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의 공장은 전국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사용연료 전환의 효과성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통계에서도 알 수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10개 기업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8%를 배출하였는데, 배출 상위 10개 업체 중 8개가 석탄 연료를 사용한 제철소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사업장으로 나타났음.

이에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대기오염 방지, 나아가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9항 신설 및 제42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제3호의2 중 “제23조제9항”을 “제23조제10항”으로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대기오염 방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로, “그 연료”를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로, “금지”를 “단계적으로 금지”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탄류
 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3. 펄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 ② 환경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고체연료 사용제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고체연료의 사용제한·금지 조치와 사용제한 해제 조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는 발전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⑨ (생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
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 20. (생략)

② (생략)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
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3조제10항-----

4. ~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① -----

대기오염 방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
른 2050년 탄소중립 국가비전
과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
-----단계적으로 금지-----

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명하여야 한다. -----

ㄱ.

1. 석탄류

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
료)

3. 땃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
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
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 환경부장관은 전국을 대상
으로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 부합하는 고체연료 사용제
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체연료의 사용제

	<u>한·금지 조치와 사용제한 해제 조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	--